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93
결재일자	2013. 1.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201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계획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서울시장애인부모회) 무 <input type="checkbox"/>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201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계획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지역사회내 자원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문화 정착 및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코자 함

1 사업 개요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6407(2011.12.28)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 350가정/년320시간이내 지원(단 선정 후 1개월간 미사용시 서비스제한)
- 전체 대상자 350가정 중 2~5%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돌보미 파견 및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 프로그램으로 지원

사업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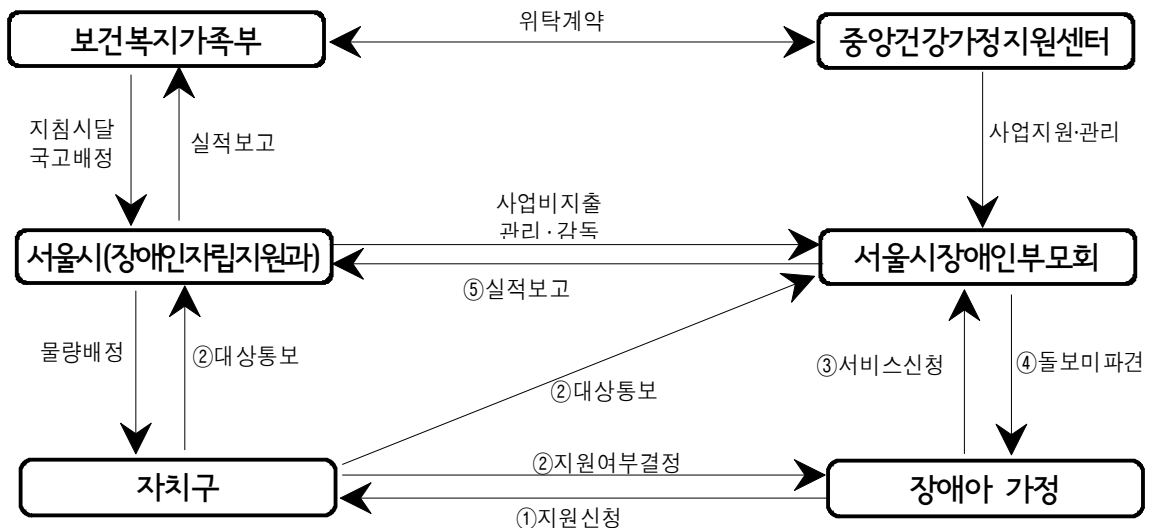
- 운영단체 : 서울시장애인부모회 (회장 박선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13-277(☎468-4889)

2013년 예산 : 781,500천원(국비30%, 시비70%)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총괄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기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업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총괄 및 사업 시행 자체 사업추진 계획 수립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시행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원물량 배정 사업시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행복e음) 소득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
사업시행기관	서울시장애인부모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장애아돌보미 모집 및 교육, 파견 등 사업 관리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실적보고 및 사업 집행
사업지원기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운영 지원 및 기관 관리 사업운영매뉴얼, 돌보미 교재 개발보급 사업담당자 교육 및 관리 사업 실적 평가 및 홍보 등

※ 사업 추진체계도



2 2012년 추진현황 및 실태

□ 추진실적

- 장애아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295명의 장애아가정에 181명의 돌보미를 파견하여 22,481건, 79,065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서비스이용 295가정 중 한부모가정 44, 조손가정 1, 맞벌이 가정 22, 다문화가정 5, 양육자가 장애인인 가정도 5가정이 있었으며,
- 연령대별 이용 아동현황은 만3세미만 25명, 3~5세 103명, 6~11세 121명, 12~18세미만은 46명으로 학령기 아동의 이용율이 43%였음.
-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은 지적(자폐포함)장애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 38.9%, 기타 5%로 나타남.
- 주요 서비스이용 내용으로는 학습 및 놀이지원 31.7%, 외출지원 30.9%, 치료동반 27%, 신변처리 8.8%, 일상생활지원 1.5%로 나타남.
-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총15회에 걸쳐 448명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족나들이, 부모교육, 부모나들이,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였음.
- 긴급돌봄서비스는 13명의 아동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음.
- 2012년 사업 추진실적 총괄 (실인원/연인원)

구 분	돌보미 활동현황		연계가정	연계건수
	돌보미	활동시간		
2012년	181/1,375	79,065	295/2,024	22,481

□ 주요성과

- 서비스 이용가구의 대폭확대(2011년 245가정 → 2012년 295가정)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돌보미와 장애아동 사이의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돌보미와 양육자간의 유대관계도 잘 형성되어약화된 가정의 기능을 강화에 기여

3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업량 조정 및 근거법령 변경으로 수혜대상 확대
- 돌보미 면접기준 완화 및 강사기준 추가로 돌보미 참여 확대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투명성 및 사업추진 성과 제고

□ 세부 추진계획

① 대상자 확대, 사업량 조정

- 장애아돌보미 파견 : 350가정(55가정 확대), 연320시간 범위 내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 사업량 조정 :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을 5~10%에서 2~5%로 변경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소요예산 : 691,2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장애아가족의 정서적 안정 및 역량강화를 위한 휴식지원프로그램 실시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가족캠프, 가족문화프로그램, 가족상담(치료), 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교육,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
 - 소요예산 : 32,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근거법령 변경으로 대상자 확대
 - 현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아동(1급, 2급, 3급 일부*)에게 서비스 제공
 -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기, 간질
 - 변경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아동(1급, 2급, 3급*)에게 서비스 제공
 - * 추가 유형 : 지체(하지),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② 돌보미 면접위원 기준 완화 및 강사기준 추가

○ 돌보미 면접위원의 기준완화로 돌보미 채용 지원 강화

- 현행 :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장애아 특수교육 및 복지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등)
- 변경 :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장애아 특수교육 및 복지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등) 포함

○ 돌보미 교육 강사기준 추가로 다양한 전문가 참여폭 확대

- 현행 : 특수교육·재활교육 등 석사이상 3년 이상, 특수교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 변경 : 특수교육·재활교육·사회복지학·가정학·상담학 등 석사이상 3년 이상, 특수교사 2급 이상·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 취득 후 5년 이상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관리

- 돌보미 양성방법 : 사업수행기관 자체 선발 및 교육
 - 참가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교육시간 : 40시간(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1년이상 근무자는 교육시간 면제)
 - 지급단가 : 1시간/6천원(교통비 별도지급)
 - 주요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가사활동 제외,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③ 평가기관 변경으로 사업추진 성과 제고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에 따른 평가 기관 변경

- 현행 : 서울시복지재단에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탁
- 변경 : 시에서 연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성과제고 및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부모회(회장 박선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277 (02-468-4889)

○ 위탁기간 : 2013.1월 ~ 12월

○ 사업인력 : 3명 (전담인력 2명, 보조인력 1명)

※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12년 사업수행기관 재계약 원칙(협약서 별첨)

□ 2013년 운영예산 : 781,500천원(국비30%, 시비70%)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계	돌보미수당	휴식지원사업	교육비	관리운영비
781,500	691,200	32,000	11,300	47,000

○ 교부 및 집행방법 : 시 → 서울시장애인부모회로 직접 교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교부신청에 의거 월별 교부
- 월별 사업실적 및 분기별 집행결과 보고

4 행정 사항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자치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협약체결 : '13. 1월 중

○ 월별 사업비 교부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서울시장애인부모회 → 시

○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탁 : 서울시

붙임문서 : 2013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협약서 1부. 끝.

'13년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 이라한다)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 지회(이하 “부모회” 이라 한다)는 『2013년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이하 “사업” 이라한다)을 위탁함에 “시”와 “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사업을 “부모회”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에 있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는 “부모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 지원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3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3.1.1 ~ 2013. 12. 31
3. 지원금액 : 금781,500,000원(금칠억팔천일백오십만원)
3. 지원인력 : 전담인력 2명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내용 및 위탁범위) “부모회”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장애아 돌보미 모집·양성, 보수교육, 파견(긴급돌봄포함) 및 사후관리
- ② 월별 사업실적보고 및 장애아 돌보미 급여 지급
- ③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 ④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홍보
- ⑤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승인) ① “부모회”는 협약체결시 사업계획서(예산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모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부모회”에게 지급하되, “부모회”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월별로 지급한다.

② “부모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모회”에게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부모회”의 집행내역을 감안하여 “시”가 결정한다.

② “부모회”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재무회계규칙,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부모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모회”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유효기간은 위탁 사무의 인계·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부모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부모회”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부모회”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 결과 제출) ① “부모회”는 “시”가 지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분기별 10일 이내에,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

카드 영수증, 무통장 입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은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부모회”에게 이를 보완, 개선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부모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규정 및 법령 준수) “부모회”는 ‘201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부모회”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부모회”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부모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부모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모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부모회”는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와 “부모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회”는 이로 인한 일체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부모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부모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 해지, 변경할 경우 “시”는 한 달 전에 그 사유를 “부모회”에게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시”와 “부모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약정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시”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감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부모회”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1.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협회(성동구 상원12길 1)

회장 박 선 옥 인